

(주)SAS손해사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13층 (우)06651
대표전화 : 1644-8672 / 팩스 : 070-8668-0330

Date : 2021. 01. 26

수 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참 조 : 삼성화재서비스 일반물보험 4팀 (담당 : 박 성 민 대리님)
제 목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인천광역시청” **현장보고서**
사고번호 : 20210121-52066 (증권번호 : 82190024450000)

귀사의 요청에 의거 2021년 01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
공원지하차도 송내방면도로에서 발생한 **대인·대물배상책임사고(피해자 : 박 재 환, 피해물 :
마세라티 기블리)**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사정(**현장**)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
다.

손해사정사 : 김 태 환



조 사 자 : 신 승 수 / 차 장 [인]



Mobile : 010-9161-9625

주식회사 SAS손해사정

대 표 이 사 장 준 영



1. 총괄표

| 구분 | 보상한도 | 추정손해액 | 자기부담금 | 추정지급보험금 |
|----|------------|------------|---------|------------|
| 대인 | 50,000,000 | 2,000,000 | 100,000 | 1,900,000 |
| 대물 | | 45,000,000 | | 45,000,000 |
| 합계 | 50,000,000 | 47,000,000 | 100,000 | 46,900,000 |

2. 보험계약사항

| 구분 | 내용 | 비고 |
|-------|------------------------------------|---------------------|
| 보험종목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 - |
| 증권번호 | 82190024450000 | - |
| 사고번호 | 20210121-52066 | |
| 계약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
| 피보험자 | 인천광역시청 | -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 - |
| 사고장소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지하차도 송내방면 도로 | - |
| 보험기간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사고일자 2021.01.17. |
| 보상한도액 | 도로시설 대인·대물 일괄 : 50,000,000원 (1사고당) | - |
|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 각각 : 100,000원 (1사고당) | - |
| 특이사항 | - | - |

3. 일반사항

| 가. 피보험자 관련사항 | |
|--------------|--------------------------|
| 상 호 | 인천광역시청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
| 연 락 처 | 032-453-8452 (이 제 은 주무관) |
| 기타사항 | - |

| 나. 피해자 관련사항 | |
|-------------|-------|
| 성 명 | 박 재 환 |
| 생년월일 | 조 사 중 |
| 진 단 명 | 조 사 중 |
| 소견내용 | 조 사 중 |
| 치료병원 | 조 사 중 |

| 다. 피해물 관련사항 | |
|-------------|---------------------|
| 피해물명 | 마세라티 기블리 |
| 소 유 주 | 박 재 환, 김 주 원 (공동명의) |
| 연 식 | 조 사 중 |
| 차량가액 | 조 사 중 |
| 파손부위 | 조 사 중 |
| 진행사항 | 수리대기 중인 상태임 |

4. 사고사항

| | |
|---------|--|
| 사 고 일 시 | 2021년 01월 17일 22:27 |
| 사 고 장 소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지하차도 송내방면도로 |
| 사 고 원 인 |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주의의무 소홀 경합 |
| 사 고 내 용 | <p>사고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본 사고는 상기일시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포트홀을 보지 못하고 이동하다가 피해차량의 타이어가 포트홀에 빠지면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p> |
| 조 사 내 용 | <p>①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피해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노면에 있던 포트홀에 피해차량의 앞 타이어가 빠지면서 피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임.</p> <p>②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바, 포트홀에 피해차량이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함.</p> <p>③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코스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으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코스라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었다는 진술임.</p> <p>④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측에 사고사실을 알렸고, 피보험자측은 사고사실 확인 후 보험접수한 사실을 확인함.</p> <p>⑤ 조사자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현재 사고장소의 포트홀은 보수가 된 것을 확인함.</p> <p>⑥ 현재 피해차량은 마세라티 수리업체에 입고되어 있는 상태이며, 파손된 휠은 약 2,000만원(1SET)이라는 진술이며, 피해차량의 예상견적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임.</p> <p>⑦ 현재 피해자는 통원치료 중인 상태임.</p> |

5. 손해배상책임 등 검토

| 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
|-----------------|--|
| 면/부책 | 부 책 |
| 판단근거 | <p>① 아울러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2007.9.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p> <p>②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본 사고를 판단하면,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도로의 포트홀에 피해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차량의 앞 타이어가 빠져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로서, 이는 영조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p> |

| 나. 피해자의 과실상계 | |
|--------------|--------|
| 과실비율 | 과실검토 중 |
| 판단근거 | 과실검토 중 |

| 다. 보험금 지급책임 | |
|-------------|---|
| 면/부책 | 부 책 |
| 판단근거 |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본 보험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됨. |

| 라. 구상권 성립 및 범위 | | | |
|----------------|---------|----|---|
| 성립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범위 | - |
| - | | | |

6. 추정손해액

6-1. 대인

| ■ 대인 평가기준 | |
|-----------|--------|
| 치 료 비 | 서류징구 중 |
| 위 자 료 | 서류징구 중 |
| 운전자 과실 | 과실검토 중 |

| ■ 대인 평가결과 | | |
|-----------|-----------|----------|
| 구 분 | 손해액(₩) | 평 가 내 역 |
| 치 료 비 | | : 서류징구 중 |
| 소 계 | | |
| 위 자 료 | | |
| 추정손해액 | 2,000,000 | |

6-2. 대물

| ■ 대물 추정손해액 산출내역 | | |
|-----------------|------------|----------|
| 구 분 | 손해액(₩) | 평 가 내 역 |
| 수 리 비 | 20,000,000 | : 서류징구 중 |
| 월 수리비 | 20,000,000 | |
| 렌 트 비 | 5,000,000 | |
| 소 계 | 45,000,000 | |
| 추정손해액 | 45,000,000 | |

7. 향후 진행방향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 사고임을 안내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오르막길 구간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과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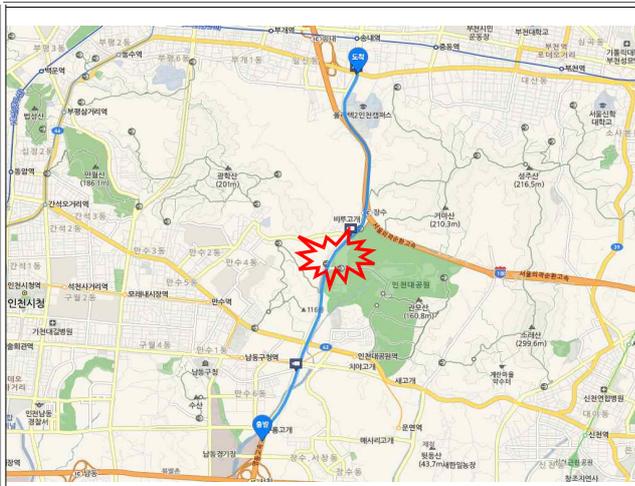
현재 피해차량은 마세라티 사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상태이며, 수리비는 약 2,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주장이며, 파손된 휠은 튜닝한 휠로 1SET 2,000만원 이라는 주장으로 현재 단종된 모델로 국내에 재고가 없다는 주장임.

현재 피해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마세라티 사업소에서 보관료를 청구하여 보관료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태임.

피해자는 피보험자측에게 동 사고장소에서 몇 건의 사고가 있었는지 문의하였음.

본 손해사정서는 당사의 양식과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 당사자 어느 일방에도 편중됨이 없이 작성되었음을 명백히 합니다. [끝]

첨부 : 사고관련 사진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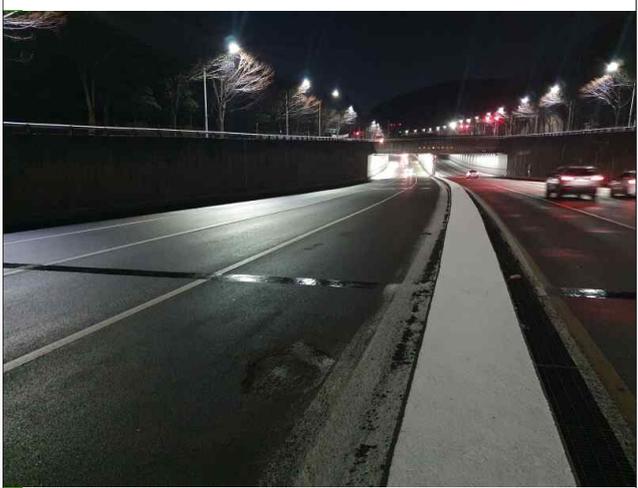
담보구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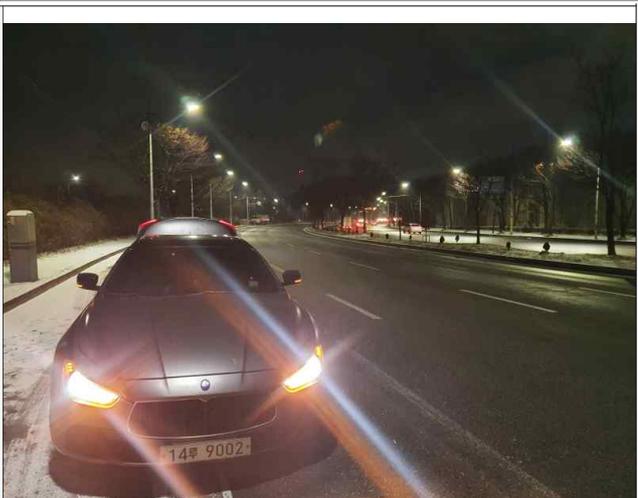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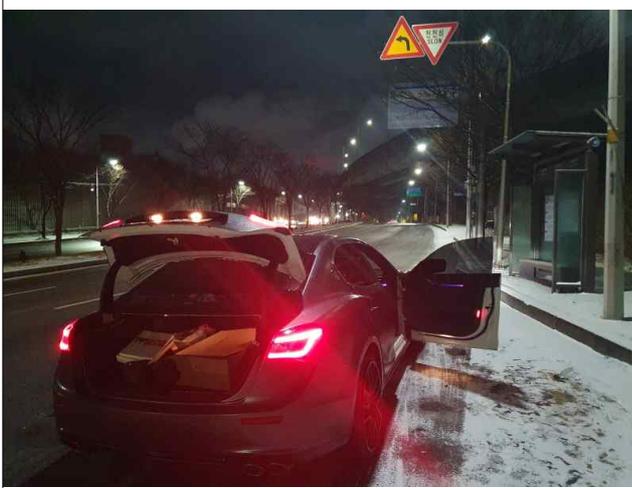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 차량사진



피해 차량 충격부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충격직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충격직후)